

응시원서

(제26조제1항 관련)

본인은 2026년도 제3회 기간제 상시계약집배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미기재)	성명	(한글)
응시직종	기간제 상시계약집배원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주소)			
전자우편		응시권역	
전 화		휴대전화	

..... (☎)

※응시번호	(미기재)	응시표 2026년 제3회 기간제 상시계약집배원 채용시험	
응시직종	기간제 상시계약집배원	성명	
2026년 월 일			
평택우체국장 (☎)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평택우체국 지원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당일은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력서 양식

(앞장)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경력()	지원분야	기간제 상시집배원	접수번호
		(미기재)		
성명	(한글)			
현주소	(주민등록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2. 교육사항				
직무관련 직업교육	교육과정명	주요내용	기관명	교육기간
3. 근무 경력사항 (지원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항 기입)				
근무기간	구체적 업종	직위/역할	담당업무	비고
4. 운전 및 정보화 관련 자격사항 (채용 자격요건 관련 사항은 필히 기재)				
자격분류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5. 정보화 등 자격사항 (채용 우대 관련 사항은 필히 기재)				
자격분류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 자격분류 : 국가공인자격일 경우 '국가공인', 민간공인 자격일 경우 '민간공인'으로 기재				

(뒷장)

6. 직무관련 기타 활동			
활동구분	소속조직/활동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7. 특기사항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8. 기타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	
9. 운전경력사항 안내			
※채용이 확정된 경우 운전경력사항 중 운전면허 취소·정지, 운전사고, 법규위반 사항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위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운전경력사항이 있는 경우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1.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향후 위 기재 사항 중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누락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합격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지원일자:		지 원 자: (인)	

※ 본인 자필로 작성하며, 기재된 사항이 합격자 발표 이후 계약서 작성 시 제출된 자료와 대사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거나 허위 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부주의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종	기간제 상시계약집배원
생년월일	. . .	응시분야	
지 원 동 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본인의 장·단점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만일 우정사업 종사 근로자로 근무하게 된다면			

※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정보, 민감정보(사상, 신념(종교) 등)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기재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 . . . 작 성 자 : (서명 또는 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Email주소, 운전면허, 운전경력,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장애여부, 취업보호대상자여부, 자기소개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입사지원 서비스 및 채용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① 본인 확인 이용 : 성명, 생년월일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③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 교육사항, 근무경력사항, 자격사항, 직무관련 기타 활동, 자격증 등 ④ 채용시 우대를 위해 이용 : 장애인 구분, 수급대상자 구분 등 ⑤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입사지원서 제출 후 채용전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종료된 후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당사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 정보, 수급자 정보
민감정보 의 수집 및 이용목적	채용 및 채용관리
민감정보 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서 제출 후 채용전형 및 이의신청 절차 등 종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이름 : (서명 또는 印)

평택우체국장 귀하

※ 응시자의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본인에 대한 범죄경력 자료를 직접 조회·열람하였으며, 조회 결과 채용공고
혹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자격요건) 2항에 위배되는 범죄
경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채용 및 근로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이
의
의

성명 : _____ (서명)

※ (범죄경력 자료 조회·열람 방법) 본인에 한하여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혹은 휴대폰 인증 후 확인 가능

※※ (관리규정 제23조(자격요건)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에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필요시만 작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평택우체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 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 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